

4 운영규정 적용 제외 대상

□ 운영규정 적용 제외 대상

○ 별도 법령 등에 따른 의무실습 형태 및 교육과정

- 이전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별도의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실습형태는 ‘해당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라는 단서로 시행되었습니다.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시행 2017. 3. 1.] [교육부고시 제2017-115호, 2017. 3. 1., 전부개정]

제3조(우선적용)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등 별도의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현장실습은 해당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하지만 ‘우선적용’이라는 단서가 명확하지 않아 별도 법령에 따른 사항도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적용 대상으로 오인되는 요소로 작용되기도 하여 혼선을 가중시켰습니다.
- 법령 관계에서 볼 경우 별도 법령에 따른 사항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시로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하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개정 되었습니다.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시행 2021. 7. 6.] [교육부고시 제2021-19호, 2021. 7. 6., 전부개정]

제3조(적용제외) 별도 법령 등에서 특정 전공에 대해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실습형태의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운영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학교에서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않으며, 별도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1.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선실습,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현장실습 등 별도법령에 따른 의무실습 등
2.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료과정운영학교 등의 인증절차에 필요한 의무실습 교육과정 및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등에 따른 보건·의료 인력의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실습 등

□ 운영규정 적용 제외 대상의 운영 기준

○ 별도 법령 등에 따른 기준으로 운영

- 개정된 운영규정 제3조(적용제외)에 따라 별도 법령 등에 근거한 의무실습 형태 및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사항은 해당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 본 매뉴얼 [05 별첨]에는 별도 법령 등에 따른 사항을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발췌 하였으나, 이는 각 법령 등에 따른 사항과의 구분을 위한 참고 자료이므로, 세부 운영기준 등은 해당 법령을 소관하는 주무부처를 통해 확인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관련부처	관련법령 및 대상 형태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선실습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건강증진과) (보육정책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현장)실습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고등교육정책과 /산학협력정책과)	간호실습 등은 「의료법」 및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관련부처 및 인정기관을 통해 확인 필요

- 더불어 별도 법령 등에 따른 의무실습 형태 및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사항에 관한 산재보험 의무가입 적용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재보험 업무를 소관하는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운영 기준 및 가이드라인

국가자격취득과 관련된 특정 법령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고, 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모든 학교(대학원 포함)에 적용되는 현장실습 수업 방법(기존의 '현장실습' 용어를 사용한 형태)에 관한 법령 기준은

- ① 「고등교육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 ② 「산학협력법」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
- ③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입니다.

5 불인정 기준

□ 현장실습학기제로 인정되지 않는 사항

○ 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 이전 운영규정 및 매뉴얼, 정보공시 등을 통해 기존 현장실습 제도의 영역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항 및 기준을 안내하였으나, 여전히 불인정 사항을 현장실습 등의 명칭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지속되었습니다.
- 이에 이번 운영규정(고시) 개정을 통해 현장실습학기제 형태로 운영하면 안 되는 불인정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화 하였으므로, 각 학교에서는 학생이 기업을 섭외해 오거나, 학교와 무관한 학생의 인턴, 근로, 아르바이트 활동 및 조기 취업 등의 형태를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여서는 안 됩니다.
- 특히 현장실습학기제는 **학교가 관련 여건을 마련하여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과정(제도)인 만큼, 학생으로 하여금 실습기관 등을 찾아오도록 하는 일명 ‘개인섭외’ 형태는 어떠한 사유로도 현장실습학기제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와 더불어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 형태의 외부 교육과정을 ‘현장실습’형태로 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청년취업 아카데미, 0000교육원 교육과정, 빛가람 학점과정 등의 경우와 같이 특정 분야에 대한 교육(과정)을 학점인정 또는 협약 과정에서 ‘현장실습’등으로 표현하여 진행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실습기관에서 실무를 기반으로 교육 및 실무 실습이 수행되는 것이 아닌, 별도의 강사진을 구성하여 집체 형태의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에 대해 현장실습학기제로 인정하거나, 현장실습학기제 학점으로 부여하여서는 안 됩니다.
-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라 하여 무조건적이고, 무분별하게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하거나 분류하는 것은 잘못된 형태입니다.
- 관련된 학점의 인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습학기제가 아닌 「고등교육법」에서 허용하는 범주를 확인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시행 2021. 7. 6.] [교육부고시 제2021-19호, 2021. 7. 6., 전부개정]

제6조(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없다.

1.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선발하는 경우
2.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3.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4. 제4조제4항·제5항의 수업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
5. 제18조제2항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6. 제22조, 제25조제3항에 따른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7. 제25조제4항에 따른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8.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 서식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학교별 학칙 등으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의 학점으로 인정하거나, 처리해서는 안 된다.